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14조 관련)

구분	수당명	지 급 대 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		
기술	1. 기	가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			
분야	술 정 보 수	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 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	가) 5급 이상: 월 50,000원 이 하		
	당	무원(5급 이상의 경우 6급	나) 6급·7급: 월 30,000원 이 하		
		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). 다만, 4급	,		
		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 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	하 라) 지도관: 월 60,000원 이하		
		다.	마) 지도사: 월 50,000원 이하		
		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	2) 가산금		
		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			
		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 산운영직류 공무원(5급 이상			
		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	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		
		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 다)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			
		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사는 월 20,000원 이하를 가		
		다. 삭제 <2020. 3. 10.> 라.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	산하여 지급한다. 나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		
		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			
		정」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	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		
		마.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따라	, ,		
		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 원으로 선임된 사람	이하 (2) 8급 이하: 월 20,000원		
		바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			
		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사람 및 「도시가스사업			
		법」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	, , , _ , ,		
		임된 사람			

사. 전산업무[구멍뚫기(천공) • 1) 지급액 검공 및 자료의 입력・출력업 가) 3년 이상 근무자: 월 무는 제외한다]를 직접 담당 50,000원 이하 하는 공무원 나)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: 월 30,000원 이하 다) 1년 미만 근무자: 월 20.000원 이하 (비고)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 다. 2)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 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 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과 전 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 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한다. 2. 가. 의무·약무·간호직·보건진 1) 의무직렬 공무원, 보건진료소에 의 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 료 업 료 전담공무원(4급 이상의 무 등 경우 의무·약무·간호 업무 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: 교육 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 수 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닺 말한다)으로서 「의료법」 제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2조제2항 및 「약사법」 제2 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 2) 약무직렬 공무원: 월 70,000원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3)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 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 원선에 승선·근무하는 공무 무원: 월 50,000원 워 나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월 50,000원

률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

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

- 다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1) 지급상한액: 월 100,000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무원. 다만, 보건진료소에 근 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은 제외한다.
 - 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 는 공무워
 - 가)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 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 사
 - 나) 「약사법」 제3조에 따 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
 - 다)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 료기사
 - 라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」 제36조에 따른 응 급구조사
 - 2) 보건연구직렬 공무원

-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2) 지급방법: 구체적인 지급대상,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.

라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 월 250,000원 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(광역시·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) 접 종사하는 공무원[「지방공 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수 의직렬공무원(4급 이상의 경 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

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 는 시·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산물의 검역업무와 「축산물 250,000원 초과 월 500,000원 위생 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·군의

		공무원) 및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의 수의연 구직렬 공무원(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한정한다] 마. 「의료법」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	1) 5급 이상: 월 50,000원 2) 6급 및 7급: 월 30,000원
교육 및 연구 분야	3. 연구 업 무 수당	가. 연구직공무원	3) 8급 이하: 월 20,000원 1) 지급액 월 80,000원 2)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 게는 월 6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		나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(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조교 는 제외한다)	1) 5급 이상: 월 60,000원 2) 6급 이하: 월 40,000원
		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	 원장: 월 110,000원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: 월 110,000원 이하

		수	교육연구사: 월 80,000원
			(비고) 교수,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, 부교수 또는 조교수 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.
		라.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	(지급액) 1) 장학관·교육연구관: 월 22,000원 2) 장학사·교육연구사: 월 17,000원
			(비고) 1. 장학관·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(職)에 보직된 사 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. 2. 라목 해당하는 사람이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.
	4. 교원 에 대 한 보 전 당	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. 다만,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	월 20,000원
		나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4 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 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, 대 학교의 학장·처장·기획연구 실장·교양과정부장	월 60,000원
		다.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·교육 연구관	1) 1·2·3급 상당 직위: 월 70,000 원 2) 4·5급 상당 직위: 월 10,000원
,	5. 교직 수당	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	월 250,000원

특수 장비 취급 분야	6. 삭제 <202 0. 3. 10.>		
	7. 함정 근무수 당	가.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 박(병원선은 제외한다)에 월 10 일 이상 승선·근무하는 사람	
			2)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 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 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 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.
특수 행정 분야	8. 장려 수당	축 · 전기통신 · 신호 · 보 안 · 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	40,000원 이하 2) 일반직 7급: 월 38,000원 이하 3) 일반직 8급: 월 36,000원 이하 4) 일반직 9급: 월 34,000원
		다.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 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 리·급수·정수·배수·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	일반직 5급 이하: 월 50,000원 이하

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(1) 연구관: 월 40,000원 이하
- (2) 연구사: 월 30,000원 이하
- (3)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: 월 20,000원 이하
- 나) 「수도법」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 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 하는 사람(수질검사업무에 직 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)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 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(1) 1급: 월 40,000원 이하

(2) 2급: 월 30,000원 이하

(3) 3급: 월 20,000원 이하

-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금액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
- 마. 화장장·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
- 바. 공원묘지 · 납골시설 등 묘지 나 납골시설의 관리·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
- 사.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 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

라. 위생처리장·하수처리장·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 레기처리장 등 분뇨·하수·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

9. 형 등 및 직위 당 당	는 공무원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 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	지급대상 1급 4 2급 3 3급 2 4급 1	월지급액 -00,000원 300,000원 200,000원 00,000원 50,000원
		(나)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 회의 의장을 달리하여 임용(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간, 지방자치 단체 상호 간, 지방자치단체 집 해기과과 의회 사호 가 지방자	
		(비고) 1. 지급대상란 가득급대상란 나목 및 고 제2호에도 해본란을 적용한다. 2. 위 계급에는 이구관·연구사, 및 장학관·장학/	별표 14의 비당하는 경우에는에 상당하는 연지도관·지도사
	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 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 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	1)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	지급 상한액

	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·	근	4급 이상	5급 이형
	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	하 1년 미만	100,000원	70,000
	는 공무원	1년 이상	120,000원	90,000
		2년 미만	120,000전	90,000
		2년 이상	180,000원	150,000
		3년 미만	100,000 🖰	130,000
		3년 이상	300,000원	250,000
		4년 미만	000,000 1	200,000
		4년 이상	450,000원	400,000
		2) 지급방법	: 해당 직위	1의 임용
		건 및 난이	기도 등을 고	1려하여
		체적인 지	급범위 및 지	지급액은
			범위에서 하	
			장이나 지빙	! 의회의
		장이 정한	7.	
		(비고)	거 ㅁ 코 ㅇ ㄹ	서비다
		해당 전문직	전문관으로 위에서 그무	
		계산한다. 다		
		하나에 해당	하는 경력은	위 근무
		간에 합산한	,	
			过문직위군의 이 권묘지이	
			의 전문직위여 무한 경력	계시 신군
			문직위에서	전문관으
		근무한	경력(같은 직	급 및 바
		아래 직	급의 경력에	한정한다
10. 경제	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	영 1) 지급액		
자유구	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		단체의 조례	로 정하
역청업 무수당	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 원	무 금액		
1178		2) 지급방법	 	
			' 급방법은 ㅎ	배당 지방
		치단체의	장이나 지병	}의회의
		장이 정한	·다.	

11. 탺 직무수 당	가.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 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 하는 공무원	
	나. 사서직공무원(4급 이상의 경 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
	다. 읍·면·동(보건지소·보건 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 소·상담소를 포함한다)에 근 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,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	월 70,000원 이하
	라. 삭제 <2020. 3. 10.>	
	마. 지방자치단체 의회(교육위원 회를 포함한다) 사무기구에 근 무하는 공무원	(지급액) 1) 3급 이상: 월 120,000원 이하 2) 4급: 월 100,000원 이하 3) 5급: 월 80,000원 이하 4) 6급: 월 60,000원 이하 5) 7급 이하: 월 50,000원 이하
		(비고)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힘 한다.
	바.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	1) 지급액 월 70,000원 이하
		2) 가산금 가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자에 대해서는 월 30,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사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	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 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
아.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7 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 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공무원[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공무원(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) 중 수산질병 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 진 사람으로 한정한다]	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월 50,000원 이하
자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공립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(상당) 이하 일반 직 공무원 차. 직무의 중요도, 난이도,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4급 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(정원의 18퍼센트범위내)	

		지급대상	월 지급 상한액
		4급(상당) 공무원	200,000
		5급(상당) 공무원	150,000
		6급(상당) 이하 공무원	100,000
		2) 지급방법: 구청 지급액, 지급기준 밖에 지급에 필요 안전부장관이 경 지방자치단체의 의 의장이 정한다	, 지급기간과 그 요한 사항은 행정 당하는 범위에서 장이나 지방의회
12. 우 수 대 민 공 무 원 수당	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 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	2) 지급기간: 해당정된 날이 속하는부터 2년간 지급3) 구체적인 지급대그 밖에 지급에	· 공무원으로 선 는 달의 다음 달 한다. 내상·지급방법과 필요한 사항은
13. 비 상근무 수당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이하 이호에서 "재난"이라 한다)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가.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, 같은 법제 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, 재난 대응을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	80,000원 이하) 2) 지급방법: 해당 장이나 지방의회:	일 8,000원(월 지방자치단체의

비고: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